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10,800,000	51,324,000
일반회계	1,446,500,000	43,395,000
특별회계	264,300,000	7,929,000
공기업특별회계	167,500,000	5,025,000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66,200,000	1,986,0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101,300,000	3,039,000
기타특별회계	96,800,000	2,904,000
주택사업특별회계	808,000	24,24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000,000	51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30,000	183,900
치수사업특별회계	2,039,000	61,17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60,000	49,800
청소사업특별회계	65,910,000	1,977,3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902,000	27,060
수질개선특별회계	245,000	7,3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106,000	63,18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액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지방채발행은 별첨 "지방채발행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282,23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직무수행경비
3. 배상금, 국선변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재해대책비 및 복구경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경비